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5060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2. 14. 접수 제27409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2019. 4. 26.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 보증금액 1억 1,900만 원, 2019. 5. 29.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2021. 4. 28. 보증금액 1,710만 원, 2021. 5. 10.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5,983,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B을 대신하여 2021. 12. 23. 주식회사 D에 508,301,821원을, 2021. 12. 29. 주식회사 C에 286,850,391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20. 11. 18. 피고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증여예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억 8,500만 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505,983,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전 1494㎡
2. 경기도 화성시		전 655㎡
3. 경기도 화성시		전 298㎡

끝.

